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남시금지구역 등의 재검토, 지정해제 등 근거 마련〉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36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낚시금지구역 등의 재검토,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 등 근거 마련 ..... | 2  |
| ※ 참고자료 .....                                | 10 |
| 1. 낚시금지구역 등 지정 현황 .....                     | 10 |
| 2. 낚시행위 금지 등에 관한 법령 현황 .....                | 11 |

## I. 제안경위

2024년 8월 27일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낚시금지구역 등의 재검토,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 등 근거 마련

개정안은 현행 낚시금지구역뿐만 아니라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하 “낚시금지구역등”이라 함)의 지정, 해제, 구역변경의 근거를 신설하고, 시·도지사가 낚시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6호 삭제 및 제46조의2 신설).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br>-----<br>-----<br>-----<br>--.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u>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u><br><u>가. 야영 행위 또는 취사 행위</u> | <u>&lt;삭 제&gt;</u>                                      |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생 략)

<신 설>

7.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② 시·도지사는 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금지구역등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지구역등의 지정 재검토 방법, 지정·해제·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

-----  
-----  
-----  
-----  
-----  
-----  
-----  
-----  
-----

|                                                                                                                                                                                                                                                                                                                                       |                                                                                                                                                                                                                                                                                                                                                                            |
|---------------------------------------------------------------------------------------------------------------------------------------------------------------------------------------------------------------------------------------------------------------------------------------------------------------------------------------|----------------------------------------------------------------------------------------------------------------------------------------------------------------------------------------------------------------------------------------------------------------------------------------------------------------------------------------------------------------------------|
|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7. (생략)</p> <p>8. 제46조(<u>제6호 및 제7호</u>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p> <p>9. · 10. (생략)</p> <p>제98조(과태료) ① (생략)</p> <p>② <u>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u>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 ④ (생략)</p> |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5조(벌칙) -----<br/>-----<br/>-----<br/>-----.</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제7호</u>-----<br/>-----<br/>-----</p> <p>9. · 10. (현행과 같음)</p> <p>제9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 등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를 한 자</u>-----<br/>-----.</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

현행법 제46조제6호<sup>1)</sup>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2)</sup>.

현재 현행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낚시금지지역은 서울 25개소, 경기 81개소 등 총 202개소임(참고자료 1).

다만,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낚시제한구역 지정·고시, 낚시금지구역등의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낚시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sup>3)</sup>.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현행법 제46조제6호를 삭제하는 한편,

---

1)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서, 2021. 5, 유원기 외 10만인

① 시·도지사가 낚시금지구역뿐만 아니라 낚시제한구역도 지정·고시, 지정해제, 구역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낚시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제46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임.

먼저 개정안과 같이 ① 낚시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구역뿐만 아니라 “제한”되는 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하천의 이용목적과 수질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낚시행위에 대한 규제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법과 유사하게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외의 하천)·호소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물환경보전법」<sup>4)</sup>에서도 낚시금지구역뿐만 아니라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현행법이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 내 야영·취사·낚시 등 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낚시행위 금지구역에 대해서만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sup>5)</sup>,

4)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법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낚시금지 관련 타법 사례 등을 고려하여 낚시행위에 대해서만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이원화하여 지정·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낚시 금지 관련 법률 비교 ]

| 법률명(조항)                               | 지정범위                   | 금지방법                       |
|---------------------------------------|------------------------|----------------------------|
| 「하천법」 제46조<br>(환경부)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 낚시금지지역 지정·공고               |
| 「물환경보전법」 제20조<br>(환경부)                | 하천·호소<br>(국가·지방하천은 제외) | 낚시금지구역 또는<br>낚시제한구역 지정·공고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br>제5조 및 제6조<br>(해양수산부) | 바다·바닷가·내수면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br>낚시통제구역 지정·공고 |

자료: 환경부

다음으로, ② 시·도지사는 낚시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후 5년마다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32호,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등 유사 입법례<sup>6)</sup>를 참고하여 재검토 기간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하천의 이용 상황 및 수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각 호의 사항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32호)」 제6조(낚시통제구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신설).

마지막으로, 현행법 상 낚시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법」에, 그 밖의 하천과 호소의 경우 「물환경보전법」<sup>7)</sup>에, 바다, 바닷가 및 내수면<sup>8)</sup>의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sup>9)</sup>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참고자료 3), 이를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547

7) 「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

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참고자료

### 1. 낚시금지구역 등 지정 현황(2024. 10. 기준)<sup>10)</sup>

[단위 : 개소 수]

| 시·도 | 하천법                     | 물환경보전법('23.12월 기준) |        |
|-----|-------------------------|--------------------|--------|
|     | 낚시금지지역                  | 낚시금지구역             | 낚시제한구역 |
| 합 계 | 202개소<br>(일부미끼 허용 20개소) | 141개소              | 7개소    |
| 서울  | 25(1)                   | -                  | -      |
| 부산  | 6                       | -                  | -      |
| 대구  | 11(2)                   | 7                  | -      |
| 인천  | 7                       | -                  | -      |
| 광주  | 12                      | -                  | -      |
| 대전  | 3(3)                    | -                  | -      |
| 울산  | 1                       | 4                  | -      |
| 세종  | 1                       | -                  | -      |
| 경기  | 81(5)                   | 33                 | 2      |
| 강원  | 3(1)                    | 8                  | -      |
| 충북  | 1                       | 25                 | -      |
| 충남  | 11                      | 14                 | 5      |
| 경북  | 8(1)                    | 17                 | -      |
| 경남  | 14                      | 6                  | -      |
| 전북  | 10(5)                   | 24                 | -      |
| 전남  | 8(2)                    | 3                  | -      |
| 제주  | -                       | -                  | -      |

10) 자료 : 환경부

## 2. 낚시행위 금지 등에 관한 법률 현황<sup>11)</sup>

| 구분            |       | 낚시금지구역                                                  | 낚시제한구역                                                                                                                                                | 낚시 등의 금지지역                                       | 낚시통제구역                   |
|---------------|-------|---------------------------------------------------------|-------------------------------------------------------------------------------------------------------------------------------------------------------|--------------------------------------------------|--------------------------|
| 소관 부처         |       | 환경부                                                     |                                                                                                                                                       |                                                  | 해양수산부                    |
| 관련 법령         |       | 물환경보전법                                                  |                                                                                                                                                       | 하천법                                              | 낚시관리 및 육성법               |
| 지정            | 지정 범위 |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지방하천은 제외)· <u>호소</u>                      |                                                                                                                                                       | <u>국가·지방하천</u>                                   | <u>바다·바닷가·내수면</u>        |
|               | 지정 주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시·도지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고려사항  | 용수의 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쓰레기 발생·처리 현황, 낚시 인구 현황, 수중생태계 현황 |                                                                                                                                                       | 하천의 이용 목적,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도, 쓰레기 발생·처리 현황, 수중생태계 현황 | 수면관리자 협의 필요              |
| 지정주체가 할 일     |       | ① 지정사실 공고<br>② 관련 안내판 설치                                | ① 낚시하고자 하는 이에게<br>수수료 징수 가능<br>② 지정사실 공고<br>③ 관련 안내판 설치                                                                                               | ① 지정사실 공고<br>② 관련 안내판 설치                         | ① 지정사실 공고<br>② 관련 안내판 설치 |
| 제한사항          |       | 낚시행위                                                    | 낚시바늘에 끼우지 않은<br>떡밥·어분을 던지는 행위,<br>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br>1명당 4대 이상 낚시대 사용행위,<br>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br>낚시바늘+떡밥을 쓰는 행위,<br>폭발물·배터리·어망을 쓰는 행위,<br>쓰레기투기·취사·노상방뇨 등 | 떡밥, 생선가루 등 미끼를<br>사용하여 하천을<br>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낚시행위                     |
| 위반 시<br>행정질서벌 |       | 300만원 이하의<br>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기타            |       | 낚시 제한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시<br>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필요                |                                                                                                                                                       | -                                                | 목적 달성 시 해제 가능            |

11) 자료 : 환경부